

2008년 2월 20일 선생님 상황(귀국)

2007년 4월 중국 공안에 잡혀 계신 이후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중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심

2월 20일-- 선생님 무사히 귀국!!

선생님께서 중국 대련 발 2시30분 대한항공 편으로 5시27분 도착하여 5시 50분경 공항을 빠져나가셨다. 애초 가장 염려했던 공항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전하게 비행기 계류장에서 바로 차량을 통해 공항을 벗어나셨다.

혹시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공항경찰대와 섭리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왔고, 오늘 당일에도 아침부터 지속적인 협의 끝에 비공개로 계류장에서 바로 나가실수 있도록 파격적인 협조를 끌어냈다.

공항에 모여든 2000 여명의 회원들은 아무도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히 귀국할수 있어 아쉬움 속에서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여러 방송 신문사에서 와서 취재경쟁을 벌였지만 출국장으로 나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원했던 그림은 그려내지 못했다.

현장에는 가라지, 평대협, 그리고 회원등 많은 사람들이 붐볐지만 회원들의 성숙한 모습으로 충돌은 없었고, 질서정연하게 잘 마무리함으로 많은 인원이 공항에 나옴으로 인해 염려스러웠던 불상사는 없었다.

동분서주하며 현장에서 수고하셨던 경기, 인천 지역장님과 교역자님들, 교단국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저녁 뉴스에는 공중파 3사 모두 자료화면을 내보내며 입국소식을 전했다.

중국에서 촬영한 화면과 비행기내 화면, 비행기에서 내리시는 모습, 차량을 탑승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공항을 빠져나가신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향후 일정은

내일 모레 양일간의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우리는 구속여부가 합당한지에 대한 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라고 한다.

그럼에도 구속이 집행되면, 우리는 구속이 부적법했거나 부당하다고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 라고 하며,

이것도 기각되면 '보석청구' 를 하게 된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이제 최대 20일간의 조사기간이 주어지고, 그 후엔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최장 6개월안에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6개월간의 재판뒤 1심판결이 나고,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면 2심청구를 하게되고, 그러면 다시 최장 6개월간의 재판이 진행되고, 2심판결에 만족치 못할 때 3심청구를 하고 그러면 다시 최장 6개월간의 재판이 진행된다.